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공건축물 설치 등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치인 공공시설건축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중 “2023년 6월 30일”을 “2025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[별표 4]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

(제13조 관련)

공공시설건축과(존속기한: 2025년 6월 30일)

총계	5
일반직 계	5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2
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	1